

교육대학원 부전공 자격검정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의 중등학교 교원자격(부전공 자격) 무시험 검정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정대상) 중등학교 현직 교사로서 본 대학원 교과과정 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졸업예정자 포함)이어야 한다.

제3조 (관련 전공 및 기본이수과목) ① 부전공 관련 전공은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 교육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기본이수과목은 5개 과목(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과목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신청서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2. 성적증명서(대학원) 1부
3. 재직증명서 1부

제5조 (부전공 과목표시) ① 주전공 자격증에 부전공 해당 과목을 표시한다.

② 부전공 과목의 표시는 동일 자격종별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자격부여는 준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자는 준교사 자격증에, 2급 또는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2급 자격증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

제6조 (검정방법) 무시험검정은 제7조 각 항의 검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시행하되 매 학기 졸업전 30일 이내에 시행한다.

제7조 (검정기준) ① 본 대학원 재학 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을 21학점 이상(기본이수영역 14학점 포함)취득 한 자

②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은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을 포함한 대학원의 표시과목 관련전공 과목으로 한다.

③ 실기교사, 양호교사,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

제8조 (자격증의 표시방법) 각 전공별 중등학교 부전공 자격증에 기재할 표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교육대학원 부전공 자격검정에 관한 내규

전 공	표 시 과 목
국어교육	국어
영어교육	영어
컴퓨터교육	정보·컴퓨터

제9조 (명부작성 및 서류제출) 부전공 자격증이 발급되면 별표 3의 양식에 의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